

# 시 정 질 문 서

## 【오세완 의원】

1. 지하수 수용가의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이 납부되지 않고 계속 증가하여 결손처분하는 사례가 대부분임. 상수도와 지하수를 같이 사용하는 수용가의 경우 상수도 사용료 및 지하수분 하수도사용료를 전과 같이 고지서 1매에 통합하여 부과, 고지 할 의향은?  
또한 체납액에 대한 시의 특별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기 바람.
2. 부천시 부실공사 예방에 관한조례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명예감독관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형식적으로만 시행되고 있어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나 조례를 폐지할 의향은?
3. 정화조 청소를 안해도 독촉장만 발송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청소를 하도록 과태료를 부과할 의향은?  
그리고, 현재 구청별 정화조 청소대상 가구소아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면 밝혀주기 바람.